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206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이종태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종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위기단계가 하향(‘관심’ 단계)되고, 정부 방역조치가 전환(의원·약국 내 마스크 착용 ‘의무’ → ‘권고’)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
- 이에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에 따른 효력이 소멸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를 폐지함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06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에 따른 효력이 소멸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」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제정·시행되었습니다.

동 조례는 등교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감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가정의 마스크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- 조례 제정 당시에는 감염병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, 서울특별시가 고시하는 ‘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

의무화 행정명령' 이 해제되는 날의 전날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지 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두었습니다.

-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였으며, 그 결과 2024년 5월 1일부로 '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' 을 해제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.

[표-1] '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' 내용

고시번호	고시명	내용	효력발생일
2024-222	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	서울특별시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」 해제	2024.5.1.(수) 00:00

-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형식적으로 조례가 계속 존재할 경우 법령 체계 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,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를 명확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¹⁾
-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, 동 조례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에 따라 조례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과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방역정책 및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

1)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94p(2022년 법제처 발행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
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